

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회 부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4. 6. 29(화) 평창군수(민원봉사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4. 7. 20(화)
- 다. 상정일자 : 제11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4.7.21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민원봉사과장 이경식)

가. 제안이유

-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시설개선 자금융자,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,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5인 이내의 기금심의위원회를 두고,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평창군금고에 예치·관리 할 수 있도록 함.
- 시설개선자금 융자와 관련하여 융자대상, 융자한도, 융자금 위탁·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, 모범음식점은 차등·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박태영)

-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평창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관내 식품업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로써, 관내 식품의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위하여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.
- 모든 조례는 지방자치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수시로 제정 또는 개정되고 있으나 제정 또는 개정된후, 조례의 사후 관리소홀로 사문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.

본 조례 역시 상황의 필요에 따라 제정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제화 이후 관리체계 구축과 실현의지를 점검하여 군민을 위한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조치하는게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.

- 본 조례는 내용상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, 한가지 아쉬운 점은, 기금의 조성계획(도·군의 출연금, 일반회계전출금등의 명시필요)이 없었다는 점입니다. 이는 통상 국·도비보조금, 군의 출연금,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보여지며, 기타 형식 및 자구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요지	답변요지
○ 기금조성에 대한 근거는?	○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상위법에 4가지로 규정되어 있음.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붙임 : 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부. 끝.